

# 2025년도 (재)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51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10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김포시 중소·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연(출자)대상 : (재)김포산업지원센터

나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지원

다. 출자·출연 주요 사업 내용

- 시 차원에서 추진이 어려운 전문적인 산업지원업무 중점 추진
- 정책기획 :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및 정책 수립, 지역특화산업 발굴·육성
- 기업육성 : 기업 조사·분석 및 DB구축, 전략산업 및 선도 기업 육성
- 인재양성지원 : 인적자원개발(교육) 지원, 신규 창업지원

## 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
나.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(출연금)

#### 4. 예산수반사항

가. 출연 예정금액 : 1,548백만 원 이내

나.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

2025년도 시 출연금	2024년도 시 출연금	전년대비 증감액
1,548	854	694

소관 실·과·소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기업지원과장 최재욱
	팀장 직위·성명	기업SOS팀장 김지연
	담당자 성명·전화	부팀장 박정인(☎2894)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(운영재원 등) 제1호

제11조(운영재원 등) 센터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 
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
- 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금 :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편성

## 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계
총 소요액		1,547,579	1,678,951	1,772,001	1,916,802	2,063,429	8,978,762
출연금	인 건 비	650,364	669,875	689,971	710,670	731,990	3,452,870
	운 영 비	437,215	459,076	482,030	506,132	531,439	2,415,892
	목적사업비	460,000	550,000	600,000	700,000	800,000	3,110,000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예산과 협의필

## 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과장 최재욱 팀장 김지연

##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<b>세 입</b>	<b>1,547,579</b>	<b>1,678,951</b>	<b>1,772,001</b>	<b>1,916,802</b>	<b>2,063,429</b>	<b>8,978,762</b>
지방세 수입	1,547,579	1,678,951	1,772,001	1,916,802	2,063,429	8,978,762
<b>세 출</b>	<b>1,547,579</b>	<b>1,678,951</b>	<b>1,772,001</b>	<b>1,916,802</b>	<b>2,063,429</b>	<b>8,978,762</b>
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금	1,547,579	1,678,951	1,772,001	1,916,802	2,063,429	8,978,762
<b>재원 조달</b>	<b>1,547,579</b>	<b>1,678,951</b>	<b>1,772,001</b>	<b>1,916,802</b>	<b>2,063,429</b>	<b>8,978,762</b>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<b>1,547,579</b>	<b>1,678,951</b>	<b>1,772,001</b>	<b>1,916,802</b>	<b>8,978,762</b>
	지방세수입	1,547,579	1,678,951	1,772,001	1,916,802	8,978,762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  
“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 
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
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 
출자를 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 
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 
어야 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 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 
교부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  
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 
로 정한다.

## □ 「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제10조(출연금) 시장은 센터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재원 등) 센터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
2.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
3.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
4. 센터의 자체사업 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